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황규복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37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02일

발 의 자 : 황규복, 김소영, 오한아
의원(3명)

찬 성 자 : 고병국, 김제리, 김창원,
문병훈, 박순규, 송명화,
이동현, 황인구 의원(8명)

1. 제안이유

- 최근 코로나19로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환경이 제약됨에 따라 공연·전시 등의 제작형태가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5가 신설됨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업) (생 략)</p> <p>1. ~ 5. (생 략)</p> <p><u><신 설></u></p> <p><u>6.</u> (생 략)</p>	<p>제7조(사업)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u></p> <p><u>7.</u> (현행 제6호와 같음)</p>